

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

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(☎ 044-201-3514)

- ▶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·처벌하고 있으나,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.
 - 따라서,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.
 - 아울러,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- ▶ 또한,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
 - 계약이행보중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

<건설공사 공정성 제고>

- ▶ 추진배경 : 건설공사 계약당사자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 도모
- ▶ 주요내용
 - ① 계약당사자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특약 법률로 무효화
 - ② 민간건설공사 경우 계약이행보중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청할 수 있는 개선
- ▶ 시행일 : 2014.2.7.